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 2010년 12월 2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동 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및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및 본 대학「대학원 학칙」제3조제4항 및 본 대학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칙」제4조4항 및 본 대학 「특수대학원 학칙」제5조의2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0, 2024. 1. 31)

제2조(설치)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1)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개정 2024. 1. 31)
2. 위탁단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개정 2024. 1. 31)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학습병행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4. 1. 31)
4.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283호)」에 따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4. 1. 31)

제3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4, 2014. 3. 1, 2015. 6. 1, 2016. 3. 1, 2016. 6. 24, 2016. 8. 30, 2017. 6. 20, 2018. 9. 4, 2020. 1. 28, 2023. 3. 22, 2024. 1. 31, 2024. 8. 26)

②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1호에 따라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분야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내로 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9. 4, 2024. 1. 31)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5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보고, 재교육형인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개정 2017. 6. 20, 2019. 8. 28, 2024. 8. 26)

②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2016. 8. 30)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 계약학과의 설치는 호서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이하 "모체학과"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모체학과가 없을 시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고 교무처(대학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대학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3. 1, 2017. 6. 20)

제5조의 2(계약학과 설치기준) ① 매 학년도 학위과정별 계약학과의 설치에 필요한 산업체 교육의뢰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6. 6. 24, 개정 2020. 1. 28)

1. 학사과정 : 15명 이상(개정 2019. 8. 28)
2. 석사과정 : 5명 이상
3. 박사과정 : 5명 이상

② 계약학과 개설 신청 시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학기 개시 90일전까지 관련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6. 6. 24)

[본조신설 2016. 6. 24]

제6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2016. 6. 24>

제 3 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석·박사과정은 「대학원 학칙」제5조에 따른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탁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위탁단체에서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 지원 자격은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7. 6. 20, 2019. 8. 28, 2024. 1. 31)

③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신설 2019. 8.

26)

④ 산업체등의 소속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신설 2019. 8. 26)

제9조(입학전형) ① 계약학과의 학생선발 절차는 학칙(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제 규정을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의 교육대학원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생선발 및 전형방법은 협약기관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운영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4. 1. 31)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다만,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입학 가능)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16. 3. 1, 2024. 1. 31)

제10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위탁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3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3개 학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45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위탁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제 4 장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제12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위탁단체와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그 기준은 총 학점으로 하고, 교과목 이수단위를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료학점 및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등

제15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위탁단체와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

② **<삭제 2016. 3. 1>**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8. 30)

② 학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 위원은 교무부처장, 계약학과 학과장, 산업체관계자, 학생으로 하고 산업체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한다. 학사팀장을 간사로 하고 필요시 소속 전임 교원을 위원 위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8. 30, 개정 2018. 9. 4)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소속대학원장, 위원은 교무부처장, 계약학과 학과장, 산업체관계자, 학생으로 하고 산업체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학원교학팀장을 간사로 하고 필요시 소속 전임 교원을 위원 위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8. 30, 개정 2018. 9. 4)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8. 30)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 8. 30)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위탁단체와의 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수업료 등 납부)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위탁단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4)

제19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사과정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졸업요건의 특례) ① 계약학과의 학사과정 학생은 본 대학 공통졸업요구조건 중 「학칙 시행규칙」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른 취업기초과정과목 및 기본인성과목의 이수의무 적용을 면제한다.

② 계약학과의 학사과정 학생은「학칙」제55조에 따른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보고서・설계서・실기발표 등을 포함한다) 제출의무 적용을 면제한다.

제21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부) 또는 관련학과(부)에 소속시키며, 해당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졸업요건, 학생 부담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5조 2항 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

제 6 장 보 칙

제22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31)

② 교육대학원 계약학과와 관련된 학칙 및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1. 31)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별표1]은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별표1]은 2023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6)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 6. 1, 2016. 3. 1, 2016. 6. 24, 2016. 8. 30, 2017. 6. 20, 2018. 9. 4, 2020. 1. 28, 2023. 3. 22, 2024. 1. 31, 2024. 8. 26)

계약학과 명칭 및 정원 등

□ 2014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공과대학	기술경영학과	재교육형	3학년편입	30	공학사	2014.03.01. ~2016.02.28
박사	대 학 원	나노융합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5	공학박사	2014.03.01. ~2017.02.28

□ 2015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학과*	재교육형	3학년편입	30	공학사	2015.03.01. ~2017.02.28
석사	대 학 원	나노융합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공학석사	2015.03.01. ~2017.02.28

* 2016학년도 1학기 융합기술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 2016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생명보건과학대학 *	간호학과	재교육형	4학년편입	20	간호학사	2016.03.01. ~2017.02.28
석사	글로벌창업대학원	지식서비스 창업컨설팅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경영학석사	2016.09.01. ~2018.08.31
박사	대 학 원	나노융합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5	공학박사	2016.03.01. ~2019.02.28

□ 2017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재교육형	4학년편입	20	간호학사	2017.03.01. ~2018.02.28
석사	글로벌창업 대학원	지식서비스 창업컨설팅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경영학석사	2017.03.01. ~2019.02.28
박사	일반대학원	나노융합 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5	공학박사	2016.03.01. ~2019.02.28

* 2017학년도 1학기 생명보건대학으로 명칭 변경

□ 2018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공과대학	융합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공학사	2018.03.01. ~2022.02.28
석사	글로벌 창업대학원	지식서비스 창업컨설팅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경영학석사(창업컨설팅) 경영학석사(자산관리컨설팅) 경영학석사(재무관리코칭) 경영학석사(시니어비즈니스컨설팅)	2018.03.01. ~2020.02.28
박사	일반대학원	나노융합 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5	공학박사	2016.03.01. ~2019.02.28

□ 2019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공과대학	융합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공학사	2019.03.01. ~2023.02.28
석사	글로벌 창업대학원	지식서비스 창업컨설팅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경영학석사(창업컨설팅) 경영학석사(자산관리컨설팅) 경영학석사(재무관리코칭) 경영학석사(시니어비즈니스컨설팅)	2019.03.01. ~2021.02.28

□ 2020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학사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재교육형	편입 (4학년)	15	간호학사	2020.03.01. ~2021.02.28

□ 2023학년도

구분	단과대학 / 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석사	일반대학원	나노융합 기술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공학석사	2023.03.01. ~2025.02.28

□ 2024학년도

구분	단과대학/대 학 원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입학정원	학위명	설치기간
석사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	재교육형	신입	10	신학석사	2024.09.01. ~2027.08.31
박사					10	철학박사	
석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학과	재교육형	신입	15	교육학석사	2024.09.01. ~2027.02.28